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3
----------	-------

발의연월일 : 2018. 12. 11.

발의자 : 지상욱 · 김성찬 · 성일종

정태옥 · 김성원 · 박명재

유승민 · 이훈 · 김병욱

이혜훈 · 유의동 · 박찬대

고용진 · 이태규 · 추혜선

최운열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은 부실관련자등의 금융거래기록 전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재산 이동·은닉상황을 파악 가능하게 하므로,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임. 이에 부실관련자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 규정을 상시화 함으로써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업무 및 재산 정보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요구·활용에 관한 적정성,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을 심의하는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관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예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특정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가 생략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근거 법률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른 점을 개선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는 통보의무가 있는 예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대하여도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1조의5).

다.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10692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회사의 장에게”를 “금융회사의 장 또는 특정점포에 대해”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를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특정점포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등의 장은”을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특정점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등의 장에게”를 “금융회사등의 장 또는 특정점포에 대해”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자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자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장이 금융회
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용회
사등의 장 또는 특정점포에 대
해-----

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제15조의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 중 사장이 지명한 자 1명

2. 금융, 회계,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자 4명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

<p>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u>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p>	<p>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p>
---	--